#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9383 제안연월일 : 2025. 3.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이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2017	정부	2024.7.19.	<ul> <li>○ 제418회국회(정기회)</li> <li>제4차 전체회의(2024.11.18.)</li> <li>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li> <li>○ 제422회국회(임시회)</li> <li>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2.19.)</li> <li>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li> <li>○ 제423회국회(임시회)</li> <li>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li> <li>상정·심사· 번안 의결(대안반영폐기)</li> </ul>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2280	한지아의원	2024.7.26.	<ul> <li>○ 제418회국회(정기회)</li> <li>제4차 전체회의(2024.11.18.)</li> <li>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li> <li>○ 제422회국회(임시회)</li> <li>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2.19.)</li> <li>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li> <li>○ 제423회국회(임시회)</li> <li>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li> <li>상정·심사· 번안 의결(대안반영폐기)</li> </ul>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2881	서범수의원	2024.8.16.	<ul> <li>○ 제418회국회(정기회)</li> <li>제4차 전체회의(2024.11.18.)</li> <li>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li> <li>대체토론 및 소위회부</li> <li>○ 제422회국회(임시회)</li> <li>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2.19.)</li> </ul>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 상정·심사·번안 의결(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3538	한지아의원	2024.9.2.	<ul> <li>○ 제418회국회(정기회)</li> <li>제4차 전체회의(2024.11.18.)</li> <li>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li> <li>○ 제422회국회(임시회)</li> <li>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2.19.)</li> <li>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li> <li>○ 제423회국회(임시회)</li> <li>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li> <li>상정·심사· 번안 의결(대안반영폐기)</li> </ul>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4624	이인선의원	2024.10.8.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2.6.)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2.19.)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 상정·심사·번안 의결(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3499	김남희의원	2024.9.2.	<ul> <li>○ 제418회국회(정기회)</li> <li>제4차 전체회의(2024.11.18.)</li> <li>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li> <li>○ 제423회국회(임시회)</li> <li>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li> <li>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li> </ul>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203513	김상욱의원	2024.9.2.	<ul> <li>○ 제418회국회(정기회)</li> <li>제4차 전체회의(2024.11.18.)</li> <li>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li> <li>○ 제423회국회(임시회)</li> <li>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3.5.)</li> <li>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li> </ul>

나.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5.)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3.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 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 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 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

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 조제5항).

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 다.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6 항 및 제65조).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함(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등).
- 마.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 등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
- 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를 추가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사.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를 "16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정시설의장"을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정시설의"를 "교정시설등등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을 "피해아동·청소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

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3.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영상녹화 및 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 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을 "제1항에 따른 영상 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 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영상녹화 과정 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 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촬영한 영상물"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망
- 나. 외국 거주
-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라. 소재불명
-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을 "피해아동·청소년을"로 한다.

제29조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청소년"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6호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을 "제2조제 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자격취득 과정"을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제56조제1항제3호 중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 임제공업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

호 전단 중 "채용하는 사업장"을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 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56조제4항 본문 중 "제10호"를 "제10호 및 제18호"로,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장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 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다.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한다)
- 3. 여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제5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청소년활동기획업소"를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아동·청소년의 고용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을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제57조제4항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단,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 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제65조제3항 중 "실형"을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교정시설의"를 "교정시설등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25조의2제1항, 제34조제2항제16호, 제35조제1항, 제56조제1항·제4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7조제2항제2호·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폐쇄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6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
작・배포 등) ① ~ ④ (생 략)	작·배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u>구입</u>	⑤ <u>구입·</u>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	<u>소지 또는 시청한 자</u>
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	착취 목적 대화 등) ①
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	<u> 아동ㆍ청소년</u>
<u>년</u>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u>정보통신</u>	② <u>16</u> 剂
<u>망을 통하여 16세</u>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u>&lt;신 설&gt;</u>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
	<u> 벌한다.</u>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 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⑦ (생략)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u>교정시</u> 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 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생 략)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 관계인은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u> 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
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u>교정시</u>
<u>설등의</u>
⑨ (현행과 같음)
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
려) ①
<u>피해아동·청소년</u>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u>아동·청</u> 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 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 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 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 다.
-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 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u><신 설></u>

<신 설>

② · 청소년으	 <u>피해아동</u>

- 1.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 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 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 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 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3.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 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 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 ④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조력 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본다.
- 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 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 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 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신 설>

2. (생략)

②·③ (생 략)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제26조(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 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 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	조의2(c	가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변	범죄의	수사	특례)	1		

####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 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 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 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 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 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 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 <신 설>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 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 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 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 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 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 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

여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 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 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 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 에는 지체 없이-----
- ⑤ -----제1항 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 ⑦ -----피해 <u>자 또는 법정대리인</u>이 신청하는 <u>아동·</u>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

경우에는 <u>영상물 촬영과정에서</u>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u>촬영</u>

 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

 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신</u> 설>

-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1. <u>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u> 착한 시각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u>황한 영상녹화물-----</u>
  -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 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 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

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 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 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 (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 정한다.

<u>가. 사망</u>

나. 외국 거주

<u>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u>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 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u>아동·</u>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

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u>피해아</u>
<u>동·청소년</u>
<del></del>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
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
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u>청구하여야 한다</u> .
케이어 (시리카레세 하노 기타이 토

석) ① 법원은 <u>아동·청소년대상</u>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 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 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u> <u>자</u>,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u>아동·청</u> 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 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

석) ① <u>피해아동·정소년</u>
은
<u>-</u>
<u>.</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u>피해아동·청소년</u>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아동
· 청소년
0 <u>4                                  </u>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2)

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 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 15. (생략)
-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
  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
  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
  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 ③ (생략)

#### ② · ③ (생 략)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
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
<u>업을 하는 사업장</u>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u>자격취득</u>
<u>및 보수교육 과정</u>
<u>.</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의 취업제한 등) ①

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 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 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 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 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 ~ 2의3. (생 략) <신 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 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 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

<u>아니하다</u>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
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
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 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u>지정하</u> 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 습자를 말한다)

- 4. ~ 10. (생략)
-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 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12. (생략)
-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신 설>

<u>가.</u>・<u>나.</u> (생 략)

- 14. (생략)
-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 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 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 소"라 한다)

<u>정</u> 하여 고시하
는
4. ~ 10. (현행과 같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한 한 법원 ] /제3고 에 떠 한
<u>정하여</u>
<u>고시하는</u>
12. (현행과 같음)
13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u>청</u> 소년게임제공업
 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b>_</b> , ,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
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16. (생략)

-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 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
    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
    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
    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

반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등록한 단체

16. (현행과 같음)

17. 「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 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나 <u>채용하는 사업장</u>(이하 "가정 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 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 다.

#### 19. (생략)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 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 25. (생 략) <신 설>

- ② · ③ (생 략)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
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u>업장</u>
,
19.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21. ~ 25. (현행과 같음)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
<u>육기관</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0호 및 제18
<u>\$\bar{\bar{\bar{\bar{\bar{\bar{\bar{</u>
<u>ণ্</u>
<u>가・허가・등록・신고를</u> 관할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 ⑨ (생 략)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점검·확인하여야한다.
  -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2호
     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
     조의 학교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u> 지방자치단체의 장</u>
<u>,</u>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
인) ①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
<u>1. 교식   6년</u>
<del></del>
<u>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u>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u>학교</u>
<u>나.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u>
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
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
는 외국교육기관
다.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
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 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 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 5. (생략)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 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 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에 한정한다)

<삭 제>

- 3. 여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u>나. 제56조제1항제6호의 이주배</u> 경청소년지원센터
  - 다.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의허가를 받거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 라. 제56조제1항제18호의 가정 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4.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 동시설
- 2. ~ 8. (생략)
-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u>인</u> <u>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u>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 업장
-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u>청소년</u> 활동기획업소
- 11. (생략)
-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u>아동·</u>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13. ~ 17. (생략)
-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
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
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
<u>다)</u>
2. ~ 8. (현행과 같음)
9 <u>청</u>
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10 <u>청소년</u>
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11. (현행과 같음)
12노래연
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
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u>a // a / p 0                            </u>
13. ~ 17. (현행과 같음)
4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 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신 설>

6.·7. (생략) <u><신 설></u>

5 · 6 (생 략) 제65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
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
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
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단,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한다)
6.•7. (현행과 같음)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
기관
 ⑤ · ⑥ (현행과 같음)
세6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
유)
③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
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
한다)
<b>-</b> 1/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 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⑤(생략)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u>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u>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 ③ (생략)

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	관한	법률_	,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	에 관	한 병	법률」	또
	는	「え」	료감호	등	Ⅱ 관측	한 법률	를 <sub> </sub>
	4	• ⑤	(현행	과 건	같음)		
줴	672	조(과티	대료) (	[) (ক্	변행과	같음)	,
	2						
	1.	(현행3	과 같음	<u>)</u>			
	2.	제582	조제1형	·에	따른	해임요	1구
	5	도는 집	같은 조	스 제:	2항에	따른	폐

③ (현행과 같음)

쇄요구----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 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